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0
----------	-----

2017. 3. 3.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최광옥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7년 4월 21일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광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단양소백산중학교(2017. 3. 1. 개교)가 벽지학교 ‘라’ 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별표에 추가하고자 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등급	사·군	위 치	기 관 명
라	단양군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동 조례안은 단양군에 위치한 가곡중학교, 단산중학교, 별방중학교가 2017년 3월 1일 폐지되고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되어 벽지학교 ‘라’ 등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에 단양소백산중학교를 추가 반영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특수지군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야영장)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성면 선암계곡로 1092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대강면 온천로 719-7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양성면 학교말2길 50	강천초등학교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특수지군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u> (제2조 관련)				[별표] <u>특수지군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u> (제2조 관련)			
□ 벽지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라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라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u><신 설></u>	<u><신 설></u>			<u>영춘면</u> <u>장발선들길 14</u>	<u>단양소백산</u> <u>중학교</u>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관 계 법 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대통령령 제27770호, 2017.1.6., 일부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6.11.29>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6.][[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

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9.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6.17.] [교육부령 제100호, 2016.6.17., 일부개정]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1985.12.31.]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단양소백산중학교(2017. 3. 1. 개교예정)가 벽지학교 '라'등급에 지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반영
- 관련: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292(2017. 2. 1.)

2. 비용 발생 요인

- 단양소백산중학교 근무자 11명(교원 9명, 일반직 2명) 특수지근무수당

3.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12조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 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병지('라' 급지) 월 3만원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비용 추계		연도별 비용 추계				
산출기초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3,960	3,300	3,960	3,960	3,960	15,180
가. 특수지근무수당 라지역 360,000원× 11명=	3,960	3,300	3,960	3,960	3,960	15,180

※ 2017년은 10개월분만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반기환